# 주 요 개 정 내 용
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19호(2023.11.21.) 관련 -

## ■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

#### □ 관련근거

- ○「아동복지법」제38조(자립지원)
- ▶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19호(2023.11.21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・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일부개정

### □ 개정사유

○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

## □ 주요 개정내용

- O (본인일부부담금, 청구액 개정)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추가
  - (별첨 1, 별첨 2, 별첨 4) 의·치과, 한방 및 약국명세서 일반내역의 '본인일부부담금'란 및 '청구액'란 개정
  - (별첨 3) Ⅱ.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제8호라목 및 마목 개정
- (별표 6. 특정기호 코드 개정) WII. 기타의 구분 25란에 자립준비 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지원 관련 진료 특정기호 'F028' 신설

구분	대 상	특정기호
25	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지원 관련 진료	F028

□ 시행일: 2023. 12. 1. 진료(조제)분부터 적용